

국 가 정 보 원

수신자 조태욱(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 3가) 3층)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2021-320	접수일 2021-06-14	(앞 쪽)
청구 내용	제목 : 국정원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내용 :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많은 관계로 첨부 파일로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 청구인(조태욱) 7차 정보공개 청구 내용 2021년 6월 14일 청구인 조태욱	
공개 내용	< 붙임 > 참조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수령 방법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우편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붙임 > 참조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 가 정 보 원



기안자
협조자
시행
우
전화번호 111

00-0000(2021.7)
주소

팩스번호

검토자

결재권자

/ 홈페이지 주소 www.nis.go.kr

/ 공개 구분

210mm × 297mm [백상지(80g/㎡)]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문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2021-320)에 대하여 법령, 관련 판례 및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刊)>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서의 각 ‘○’을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1)項, 2)項, 3)項 등으로 번호를 붙여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청구 내용 요지
1)項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시점을 당초 2009년 5월에서 2009년 7월17일로 변경한 것과 관련된 자료
2)項	2008년 12월4일 개최한 KT 전국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 회의에서 지시된 ‘선거관리 강화 방안’ 및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
3)項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한 가~바項 기재 보고서 등 자료
4)項	2014년 4월말 명퇴를 거부한 291명을 업무지원단으로 전환배치한 것과 관련 보고서 등 자료
5)項	KT가 청구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등과 관련 가~하項 기재 보고서 등 자료
6)項	2008년 KT 노사협력팀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보고서 등 자료
7)項	6개 KT 계열사의 민주노총 탈퇴여건 점검 결과 및 사업장별 실행 및 조치계획과 보고서 등 자료
8)項	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매각 관련 KT회장이었던 이석채 등에 대한 검찰수사 및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서 등

1. 1)項, 7)項 기재 정보 ⇒ 부분 공개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건 2건에 대해 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일 및 공개방법 안내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57 (청파동3가) 3층 조태욱)로 7.16까지 등기우편 발송

다만, 공개 대상 문건 중 일부 내용은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 등 관련 사항, 제3자 개인이나 단체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국가정보원법 제8조>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6호(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同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청구내용 1)項에서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참고자료(2018.4.6.) 4쪽’에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시점을 2009년 4월로 명시한 것은 실수로 잘못 입력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워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 3)項, 4)項, 5)-다~하項, 6)項 기재 정보 ⇒ 보완요청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인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나아가 “청구인으로서의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한 공개청구 정보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거나 국정원이 수행하거나 관여한 어떤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에 대한 것인지도 알 수 없어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대상 정보의 존부 확인 및 공개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項, 5)- 가~나項 기재 정보 ⇒ 정보 부존재

귀하께서 공개를 요청하신 해당 항목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항목 중 8)項 기재 정보 ⇒ 정보 부존재

귀하께서는 귀하의 이전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2021-276)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완 요청에 따라 청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금번 청구항목 제8항으로 재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 9. 귀하께 발송한 통지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서에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 (전주지방법원 2000. 2. 15. 선고 99구147 판결)을 적시함으로써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위 청구 항목은 여전히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 청구 항목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이 없어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행정안전부발)>에 따라 부득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 추진 관련 활동 내용

- 다각적인 설득 끝에 위원장이 5월초 민노총 탈퇴를 결심 하였으나 “탈퇴 시점은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면서 임단협과 연계할 뜻을 비추자
 - 사측에 민노총 탈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임단협시 노조가 요구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수용토록 하여
 - 위원장이 민노총 탈퇴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
- 그러나 임단협이 원만히 합의되었음에도 위원장은 임단협과 민노총 탈퇴 건을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붙일 경우 조합원들이 반발 할 가능성이 있다며 탈퇴 추진을 6월 중순으로 연기할 뜻을 전달 해 온 가운데
- 死去 정국 형성으로 민노총 탈퇴 강행시 좌파들의 공세가 우려된 다며 6월 탈퇴 추진 입장을 철회하고 7월 중순 탈퇴 추진 입장

KT 계열사 5개 노조 민노총 탈퇴 유도

'09. 12. 16

1. 지난 7월 KT 노조의 민노총 탈퇴를 계기로 연맹 내 KT계열사 노조 탈퇴 및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를 추진

○ KT 노사와 주 1회 접촉, KT 계열사 노조의 연맹 탈퇴 전략을 마련한 후

○ KT 계열사 을 수시 접촉, 연맹 탈퇴 필요성을 주지, 탈퇴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 KT는 계열사 를 소집하여 탈퇴 작업을 독려하고, KT노조도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탈퇴를 설득하는 등 공조

○ 연맹 위원장을 4차례 접촉, KT계열사 노조의 개별 탈퇴가 아닌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 추진을 적극 설득하여 연맹의 민노총 탈퇴 작업을 지난 11월 중순부터 본격 진행

○ 연맹의 민노총 탈퇴가 노조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어 당원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 요청과 관련

- 을 면담, 동 노조의 민노총 탈퇴 참여를 적극 설득토록 당부하는 등 관련 사측의 협조를 유도

2 그러나, KT 비계열사 노조의 민노총 탈퇴 반대로 인해 연맹 차원의 민노총 탈퇴가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 연맹 위원장 및 KT 노사와 협의하여 KT 계열사 5개 노조만을 연맹에서 분할하는 방식으로 민노총에서 탈퇴시키기로 전략을 수정하고

* 금 12.16 연맹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KT계열사 5개 노조의 분할을 결의

- 탈퇴 후 KT그룹 노조협의회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합리노조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맡도록 활동 방향을 정립